6. 住宅建設綜合計劃

자료제공 : 건 설 부

Ⅰ. 주택현황

○ 도시지역의 주택절대량 부족

• 주택건설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에 의한 주택수요의 증가로 주택부족현상은 여전히 심각

– '82~'86 연평균 주택추가수요 37만호에 비하여 주택공급은 22만호로서 매년 15만호씩 부족 누적

	'80~'87		'88~'91	
* 신규주택수요	37만호	△15만호	40만호	13만호
* 주택건설실적	22만호		53만호	

※ 인구증가율 1.1%, 가구증가율 3.2%

•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'89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주택의 절대량은 여전히 부족

주택보급률 추이

연도별	'80	'85	'87	'89	'91 추정
전 체	71.2%	69.8	69.2	70.9	74.2
도 시	56.6	58.0	58.3	60.4	

○ 주택가격 불안요인 상존

• '88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'91년 5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

하고 있으나 주택가격·안정기반은 아직도 취약

'89.12	'90. 12	'91. 4	'91. 12	'92년말 추정
82.6	100	105.7	99.7	93.1

- 수요측면에서 주택, 토지 등 부동산 선호의식과 아파트 등의 전매를 통하여 재산증식을 도모하려는 투기적 가수요가 잠재
- 공급측면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, 자재 등의 공급탄력성 저하로 주택공급구조 불안정

Ⅱ. '91 주택건설 추진실적

1. 주택건설 실적

○ '88년부터 시작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은 '91년 12월말까지 4년간 214만호를 건설하여 목표달성

- 공공부문은 '91년말까지 71만호를 건설하여 당초계획대로 추진
- 민간부문은 정부의 지원시책에 힘입이 계획을 초과하는 143만호 건설

구 분	계 획 ('88~'92)	실 적			대 비
		'88~'90	'91	계	
계	2,000천호	1.529	613	2,142	107.1%
공공부문	900	546	164	710	78.9
민간부문	1,100	983	449	1,432	130.2

○ '91년에는 총 613천호를 건설하여 계획대로 추진

- 공공부문은 건설경기진정대책 추진으로 164천호를 건설
- 민간부문은 계속된 건설경기의 호조로 4차로 걸친 건축규제에도 불구하고 당초계

획을 훨씬 상회하는 45만호(160%)를 건설

〈'91 주택건설실적〉

구 분	'91 계획	실 적	대 비
계	600천호	613천호	102.2%
공 공 부 문	159	164	103.1
영 구 임 대	51	50	98.0
근 로 자	30	36	120.0
장 기 임 대	15	15	100.0
소 형 분 양	63	63	100.0
민 간 부 문	441	449	101.6

2. 주택자금 지원실적

○ '91년에는 주택건설, 전세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으로 6조 2,642억원을 지원

-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 및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영구임대주택건설에 정부재정에서 9,700억원을 지원
- 근로자주택, 장기임대주택, 소형분양주택 등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 5,086억원을 융자
- 민영주택건설 및 구입 등에 주택은행 등의 민영주택자금으로 2조 7,856억원을 융자

구 분	'90실적	'91계획	'91실적	대 비
계	60,547억원	61,200	62,642	102%
정 부 재 정	7,342	9,700	9,700	100
국민주택기금	26,906	25,000	25,086	100
민영주택자금	26,299	26,500	27,856	105

○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지원 확대

• 근로자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민영주택구입시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호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

	'90	'91	인 상 액
사 원 임 대	1,200만원	1,500	300
근 로 복 지	1,200	1,400	200
민영주택자금	2,200	2,500	300

•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고 재해민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'89. 4월 이전 융자분에 대하여도 인하이율적용(5%→3%)

• 전·월세가격의 안정과 영세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세민전세자금 등 융자('91실적, 4,165억원)

3. 택지공급실적

○ '91년에는 1,257만평의 택지를 공급하여 200만호주택건설의 목표 달성에 기여

• '91년 전체 공급량의 77.9%인 979만평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보다 8%를 초과한 278만평을 공급

– 5대 신도시건설사업추진 및 지역공영개발단의 본격적인 택지개발 참여로 공공부문 중 지자체의 택지공급비율 증대('90, 42% → '91, 44%)

〈택지 공급실적〉

구 분	전 체	'88~'90	'91계획	'91실적	대 비
계	5,095만평	3,945	1,150	1,257	109%
공 공 부 문	3,680	2,787	893	979	110
토 개 공	1,768	1,418	350	406	116
주 공	526	384	142	142	100
지 자 체	1,386	985	401	431	107
민 간 부 문	1,415	1,158	257	278	108

○ 택지개발사업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

- 택지개발계획상 임대주택건설용지는 18평 이하 소형주택 건설용지에 포함하도록 하여 융통성 부여('91. 7. 30)

종 전			개 선
임대주택용지	20% 이상	→	18평 이하 주택지 50% 이상
18평 이하 주택지	30% 이상		

- 사업시행자별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던 국민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
-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권한 시·도 위임

4. 제도개선실적

○ 6대도시와 수도권의 주택전산화에 이어 전국 주택전산망을 구축

- 2주택 이상 소유자, 위장무주택자 등 무자격당첨자 색출기능 강화

○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

- 청약과열 방지를 위한 채권입찰제 확대실시, 20배수 청약제한
- 2주택 및 대형주택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청약 제한
- 청약예금제도 대도시인근지역에 확대 실시
-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

종합평가

○ 주택의 만성적 수급불균형 완화

- '85년 이후 계속 하락하던 주택보급률이 상승세로 반전

○ 주택가격의 지속적 안정기반 구축

-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택가격은 '91. 4월 이후 하향안정세 유지
-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 정비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
-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가수요 억제

○ 정부재정에 의한 법정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

-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하여 7~12평의 소형주택건설 정부지원

○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

- 소형위주의 주택공급 확대 및 대형·다주택보유자의 투기적 요소 억제시책 추진으로 중산층 위주의 주택정책이라는 오해 불식
- 막대한 재정부담에 불구, 영세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을 착실히 추진

Ⅲ. '92 주택건설계획

〈'92 주택 전망〉

- 주택경기는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둔화될 전망이나 계절적으로 주택건설물량이 편중될 우려가 있음
- 주택가격은 신도시 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고 분양물량의 안정공급으로 금년중에도 하향안정세 예상
  - 주택가격과 함께 전·월세 가격도 상대적 안정세 유지 전망
  - 다만 선거, 물가상승 기대심리 등에 의한 주택가격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투기억제시책 추진 필요

1. 주택정책의 기본방향

○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가격안정기조의 정착

- 안정적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·자금 등의 원활한 지원
- 자재 및 인력의 성수기 집중수요에 대비한 사전대책 강구

○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소형주택 건설에 주력

-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
- 민간주택의 소형화 유도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기회 확대
- 주택구매력의 제고를 위한 주택금융의 지속적 확충

○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 확립

2. '92주택건설계획

계획총괄

○ '92년에는 우리의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주택 50만호 건설

- 근로자 및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20만호 건설
- 민간부문에서 30만호를 건설하되 주택건설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장 책임하에 건설물량 적정관리대책 강구

〈'92주택건설계획〉

구 분	'92~'96	'92계획	'91실적
계	2,500천호	500	613
○ 공 공 부 문	1,270	200	164
• 영 구 임 대	20	20	50
• 공 공 주 택	250	50	—
— 공공임대	100	15	—
— 공공분양	150	35	—
• 근로자주택	500	60	36
— 사원임대	200	15	12
— 근로복지	300	45	24
• 소 형 분 양	500	70	78
○ 민 간 부 문	1,230	300	449

공공부문 — 전량 18평 이하 소형으로 공급

가.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의 완료('92, 2만호)

- 법정영세민의 소득수준 향상, 의료보험의 전국확대실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건설물량 축소조정(25만호→19만호)
- '92년도분 2만호는 주공이 6대도시를 제외한 기타도시에 건설

규 모	입주대상	재정지원	입주자 부담수준
전용면적 7~12평	법정영세민	건축비 85%	보증금 100~200만원 월임대료 3~4만원

나. 일반근로계층을 위하여 소형주택 11만호 건설

○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주택 6만호 건설

- 분양용의 근로복지주택과 임대용의 사원임대주택으로 구분
- 중소기업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근로자의 입주기회 확대(현행 2배→3배로 조정)

  ┌ 주택규모 : 전용면적 7~15평(기업이 직접건설시 18평까지 허용)
  ├ 자금지원 : 근로복지주택 : 호당 1,400만원(연리 8%, 5년거치 20년상환)
  │ 사원임대주택 : 호당 1,500만원(연리 3%, 5년거치 20년상환)
  └ 입주자 선정 : 근로자의 근속기간, 가구원수,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기업주가 선정하여 지자체의 장에게 신청

○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5만호 건설

- 12평 이하로 건설하여 일반근로자를 포함한 도시저소득층에게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

구 분	공 공 임 대	공 공 분 양
건 설 호 수	• 15,000호	• 35,000호
재 원 조 달	• 국정 50%(직접지원) • 국민주택기금 20%(융자)	• 재정 30%(기금전환후 융자) • 국민주택기금 20%(융자)
입주대상자	• 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 등	• 청약저축가입자
입주자부담 수준(추정)	• 보증금 400~600만원 • 월임대료 6~8만원	• 입주시 주택가격의 50% • 거치기간중(5년) : 월 8만원 • 상환기간중(20년) : 월 12만원

다. 중산화 가능계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('91 : 63천호→'92 : 70천호)

- 입주대상자 : 청약저축가입자
- 자금지원(국민주택기금) : 15평 이하 호당 1,400만원, 15~18평 호당 1,200만원(1년 거치 19년분할상환, 연리 10%)

※ 소형분양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공공개발택지 우선공급

〈'92 공공부문의 주택유형별 공급방안〉

구 분		규 모	입주대상	정부지원	입주자부담수준(추정)
○영구임대주택 (2만호) * '92사업종결		전용면적 7~12평	법정영세민	건축비 85%	보증금 100~200만원 월임대료 3~4만원
○공공주택	공공임대주택 (1.5만호)	전용면적 12평 이하	저소득청약 저축가입자 등	재정 : 50% 기금 : 20%	보증금 400~600만원 월임대료 6~8만원
	공공분양주택 (3.5만호)	전용면적 12평 이하	청약저축가입자	재정 : 30% 기금 : 20% * 연리 6% 융자	입주시 주택가격 50%, 나머지는 5년거치 20년분할상환, 거치기간중 월 8만원, 상환기간중 월 12만원
○근로자주택	사원임대주택 (1.5만호)	전용면적 7~15평(기업이 직접건설시 18평 허용)	무주택근로자	기금에서 호당 1,500만원씩 융자 * 연리 3% 융자	전용면적 13평의 경우 보증금 500~700만원, 월임대료 7~9만원
	근로복지주택 (4.5만호) * 분양용	사원임대와 같음	무주택 근로자 중 청약저축가입자	기금에서 호당 1,400만원씩 융자 * 연리 8% 융자	전용면적 13평의 경우 입주시 1,600만원 정도, 융자금은 5년거치, 20년분할상환
○소형분양주택 (7만호)		전용면적 18평 이하	청약저축가입자	호당 1,200~1,400만원 * 연리 10% 융자	입주시 2,600만원 정도, 융자금은 1년거치, 19년분할상환

민간부문 －민간부문의 소형공급 확대

○ 저소득가구의 내집마련기회확대를 위하여 민영주택의 소형건설의무비율 조정

- 18평 이하 의무비율을 현행 35%에서 40%로 상향조정
- 25.7평 초과규모의 건설비율을 현행 30%에서 25%로 축소

○ 민간부문 건설물량의 시기적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관리대책 추진

3. 주택건설 적정관리방안

가. 적정관리의 필요성

○ '91년에 4차에 걸친 건축규제조치에 따라 금년으로 이월되는 물량(약 10만호 추정) 등 대기성 건축수요가 1/4분기에 집중예상

○ 물량이 시기적으로 집중될 경우, 자재·인력 등의 부족으로 부실시공 및 주택가격안정기반의 동요우려

나. 적정관리대책

〈기본방향〉

○ 주택건설물량의 일시적 집중을 방지하여 자재·인력난 등 예방
-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건설추이를 참작하여 하반기에 집중배분
- 민간부문은 월별물량을 배분하여 지자체별로 행정지도 강화

○ 금년도 건설물량을 시·도별로 월별, 분기별 관리물량 배정

○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월별배정물량을 기초로 적정히 관리
- 단위사업의 승인물량이 월별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물량을 준수하되 월별물량의 50% 범위내에서 가감가능
- 지역별로 공공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분기별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 가능
- 100세대 이상 미분양발생시 시·군·구는 착공연기조건부 사업승인
- 시도지사는 월별관리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

○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업계획 승인권한은 92. 12. 31까지 시도지사가 환원하여 수행
-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는 현행대로 이행
- 시도는 배정된 관리물량 범위내에서 최종승인(업무처리지침 별도통보)

구 분	'92 계	1/4분기	2/4	3/4	4/4
계	500천호	120	140	120	120
공 공 부 문	200	20	40	70	70
민 간 부 문	300	100	100	50	50

4. 재원조달 및 지원계획

○ '92년에는 건설경기 적정관리를 위하여 '91년과 비슷한 수준인 6조 3,100억원 지원

-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정부재정에서 6,747억원 지원
- 일반근로계층을 위한 근로자주택과 공공주택의 건설·공급을 위하여 정부재정에서 953억원,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 7,000억원 융자
- 민영주택건설 및 구입 등에 주택은행 등의 민영주택자금으로 2조 8,400억원을 융자
- 전·월세가격의 안정과 영세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등 4,950억원 융자

〈'92주택건설자금 지원계획〉

구 분	'91실적	'92계획	대 비
계	62,642억원	63,100	101%
정 부 재 정	9,700	7,700	79
국민주택기금	25,086	27,000	108
민영주택자금	27,856	28,400	102

○ 주택금융지원 확대

- 15평 이하 소형분양주택의 호당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('91, 1,200만원→'92, 1,4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)
- 민영주택자금 이자율 주택규모별로 차등화(소형주택 융자이율 0.5 내지 1% 인하)
-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세자금융자액 증액지원('91 : 4,165억원

→'92 : 4,950억원으로 800억원 증액 지원)

- 일반전세자금 : 민영주택자금으로 4,500억원 융자(연리 11.5%)
- 영세민전세자금 : 국민주택기금에서 450억원 융자(연리 5%)

국민주택기금

○ '92년중 국민주택기금 총 2조 9,000억원을 조성하여 2조 7,000억원 지원

- 일반근로계층을 위한 근로자주택 및 공공주택과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소형분양주택 등의 건설자금으로 2조 3,710억원 지원
- 조립식 주택자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1,000억원 지원, 대지조성사업 등에 2,290억원 지원

조 성		운 용	
계	29,000억원	계	27,000
제1·2종채권	9,593	주택건설자금	23,710
청약저축	5,614	대지조성자금	1,600
융자금회수	6,833	주택전세자금	450
전년이월자금	2,000	조립식주택자금	1,000
기금채권	1,200	기 타	240
기 타	3,760		

민영주택기금

○ 민영주택자금은 주택은행, 국민은행, 보험회사, 농협 등의 일반예금 등으로 조성하여 총 2조 8,400억원을 지원

계	주택은행	국민은행	기 타
2조 8,400억원	20,000	5,000	3,400

○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지원을 위하여 구입자금은 증액지원하고 건설경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건설자금은 축소 지원

- 구입자금 : '91, 24,592억원→'92, 25,850억원(1,258억원 증액)
- 건설자금 : '91, 3,264억원→'92, 2,550억원(714억원 감액)

5. 택지공급계획

○ '92택지공급계획

- 토개공, 주공 및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는 총 945만평 공급
- 민간택지 630만평은 도시내의 나대지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 등으로 활용

〈'92택지공급계획〉

구 분	'92~'96계획	'91실적	'92계획
계	7,875만평	1,257	1,575
공 공 부 문	4,725	979	945
토 개 공	2,000	406	400
주 공	725	142	145
지 자 체	2,000	431	400
민 간 부 문	3,150	278	630

○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

- 택지의 적정량 공급을 위하여 지정 및 공급물량을 적정관리
  - 지역별로 택지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유도
  -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적정물량의 택지공급을 위한 행정지도
-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강구
  - 지정순위에 따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후 장기간 개발을 유보함에 따른 민원소지 제거

※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후 5년간 개발계획수립시 실효

Ⅳ. '92주요추진시책

1.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

가. 주택전산화 운용의 내실화

○ 전산입력자료의 미비사항 보완

- 입력자료의 일부탈루 및 오류에 대한 보완작업 추진
- 무주택기간 등 소유권 변동현황의 미입력으로 자료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자료 입력추진

○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파악을 위해 내무부의 민간등록전산화와 연계추진

- 분양 및 임대주택의 무자격·부정당첨자 색출 및 조합주택의 조합원 적격여부 등을 가구별로 철저히 확인
- 부정당첨자 등은 계약취소, 주택청약 자격제한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명단 통보

나. 주택관련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

○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

- 주택청약통장의 전매(양도·양수인) 및 알선행위(중개인) 등 공급질서 문란행위를 구체화(주택건설촉진법 개정)
- 임대주택전대시의 벌칙강화(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)
  (100만원 이하의 벌금→1,000만원 이하의 벌금)
- 사전임의 분양시의 제재조치 강화(주촉법 개정)
  (6개월 이하 영업정지, 500만원 이하 벌금→등록말소, 벌금부과)

○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의 전매·전대시에 행정대집행 근거마련(주촉법, 임촉법 개정)

- 현재는 불법전매·전대 등으로 원공급자가 환매할 경우 명도소송에 의거 퇴거조치
- 향후는 직접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

2. 신도시건설의 착실한 추진

○ 완벽한 입주대책 수립·시행

- '92년에 60,700호를 분양하여 금년중 전체계획의 22.5%를 분양
- 분당시범단지의 경험을 살려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입주전에 완비
- 입주민 주도의 자율적 활동을 제고하여 도시환경 조성유도

〈'92입주계획〉

구 분	계	분 당	일 산	평 촌	산 본	중 동
전 체 공 급	269,700	87,700	57,600	41,400	41,500	41,500
기 입 주	5,026	5,026	—	—	—	—
'92 입 주	44,729	18,293	3,654	15,921	6,161	700
'92 분 양	60,700	22,000	18,200	4,700	9,600	6,200

○ 도시기반시설의 단계적 확충

- 도로 25개 노선개통 및 사당－금정, 분당－수서간 전철완공에 주력
- 상하수도, 지역난방시설과 필수공공시설도 단계별로 완비

○ 아파트 품질관리 강화

- '91년부터 시행중인 공동감리제도의 철저한 운영
- 민간업체 자체품질시험 의무규정준수 등 품질관리의식 제고

○ 자족기능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

- 신도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
  - 수도권정비시책과 부합되는 금융업, 관광·체육시설 및 언론·문화·연구시설 등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유치
- 백화점, 레저시설 등 생활편익시설도 적극 유치

3. 자재 및 기능인력 수급안정대책의 강구

○ 수도권 골재의 안정적 공급

- 신도시건설현장의 성수기 골재구득난 해소를 위해 골재비축제도를 운영하여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급불안요인 취소(비축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100억원 지원)
- 세척시설의 적극적 활용유도로 양질의 해사골재 공급을 통하여 부실공사 미연에 방지
- 수도권내 골재자원의 권역별 이용방안 강구

○ 공산품건자재의 수급불안정 해소

- 골재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급불안상황에 대비
- 시멘트, 양변기 등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수출입물량 및 시기조정 요청(상공부, 기획원)
- 철근, 콘크리트파일 등의 건자재는 수급불안요인이 미약하나 성수기의 지역적 수급불안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

○ 기능인력의 확충과 인력절감형 공법의 이용확대

- 공공직업훈련과 기업체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기능인력 확보('91년, 26천명→'92년, 약 31천명 수준)
- 인력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조립식 주택의 공급 확대('91 : 46천호→'91 : 75천호)
  - 수도권내 P.C공장 입지규제 완화
  - P.C공장 설치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
7. '92市道別 分期別 住宅建設物量配定

구 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총 계	500,000	87,100	41,750	25,950	27,150	14,900	23,500	115,140	12,920	15,210	16,120	18,120	19,980	29,310	47,500	5,350
〈공 공 부 문〉	200,000	38,100	14,950	9,950	8,650	6,700	7,200	49,040	5,020	6,510	5,720	9,820	10,080	8,810	18,200	1,250
○ 영 구 임 대	20,000	0	0	2,000	0	0	0	1,300	1,100	2,300	1,000	4,600	2,100	2,000	3,600	0
○ 공 공 주 택	50,000	18,200	3,800	2,950	4,050	1,250	1,950	8,000	450	800	1,000	1,100	1,050	1,350	3,500	550
- 임 대	15,000	6,550	600	500	2,100	0	700	1,350	0	200	400	500	450	0	1,550	100
- 분 양	35,000	11,650	3,200	2,450	1,950	1,250	1,250	6,650	450	600	600	600	600	1,350	1,950	450
○ 근로자주택	60,000	9,000	5,900	2,200	3,700	3,600	1,800	10,100	1,700	1,300	2,000	2,500	5,000	3,000	8,200	0
- 사원임대	15,000	1,000	2,100	500	1,000	700	0	2,700	0	500	0	1,300	1,300	1,100	2,800	0
- 근로복지	45,000	8,000	3,800	1,700	2,700	2,900	1,800	7,400	1,700	800	2,000	1,200	3,700	1,900	5,400	0
○ 소형분양등	70,000	10,900	5,250	2,800	900	1,850	3,450	29,640	1,770	2,110	1,720	1,620	1,930	2,460	2,900	700
〈지 자 체〉	87,700	35,200	10,000	4,450	3,850	1,950	2,100	10,150	850	1,600	1,600	1,250	2,900	3,500	7,400	900
○ 공 공 주 택	40,000	17,100	2,400	1,950	2,950	1,250	750	6,050	450	800	600	600	1,050	850	3,000	200
- 임 대	10,000	5,700	0	0	1,500	0	0	500	0	200	0	0	450	0	1,550	100
- 분 양	30,000	11,400	2,400	1,950	1,450	1,250	750	5,550	450	600	600	600	600	850	1,450	100
○ 근로자주택	28,000	9,000	2,600	1,200	500	0	1,300	3,700	400	800	1,000	400	1,100	1,800	4,200	0
- 사원임대	4,700	1,000	1,100	0	0	0	0	700	0	0	0	0	600	200	1,100	0
- 근로복지	23,300	8,000	15,000	1,200	500	0	1,300	3,000	400	800	1,000	400	500	1,600	3,100	0
○ 소 형 분 양	19,700	9,100	5,000	1,300	400	700	50	400	0	0	0	250	750	850	200	700

구 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〈주 택 공 사〉	60,000	2,400	3,750	4,200	2,800	2,050	2,100	18,550	2,100	3,400	2,000	5,600	2,700	3,500	4,500	350
○ 영 구 임 대	20,000	0	0	2,000	0	0	0	1,300	1,100	2,300	1,000	4,600	2,100	2,000	3,600	0
○ 공.공 주 택	10,000	1,100	1,400	1,000	1,100	0	1,200	1,950	0	0	400	500	0	500	500	350
- 임 대	5,000	850	600	500	600	0	700	850	0	0	400	500	0	0	0	0
- 분 양	5,000	250	800	500	500	0	500	1,100	0	0	0	0	0	500	500	350
○ 근로자주택	10,000	0	2,100	1,000	1,700	1,600	500	2,500	0	0	0	0	0	600	0	0
- 사원임대	4,000	0	700	500	500	700	0	1,000	0	0	0	0	0	600	0	0
- 근로복지	6,000	0	1,400	500	1,200	900	500	1,500	0	0	0	0	0	0	0	0
○ 소형분양등	20,000	1,300	250	200	0	450	400	12,800	1,000	1,100	600	500	600	400	400	0
〈기 타 기 관〉	9,690	0	0	300	0	0	0	7,240	370	200	620	370	80	210	300	0
○ 소형분양등	9,690	0	0	300	0	0	0	7,240	370	200	620	370	80	210	300	0
〈주 택 업 체〉	42,610	500	1,200	1,000	2,000	2,700	3,000	13,100	1,700	1,310	1,500	2,600	4,400	1,600	6,000	0
○ 근로자주택	22,000	0	1,200	0	1,500	2,000	0	3,900	1,300	500	1,000	2,100	3,900	600	4,000	0
- 사원임대	6,300	0	300	0	500	0	0	1,000	0	500	0	1,300	700	300	1,700	0
- 근로복지	15,700	0	900	0	1,000	2,000	0	2,900	1,300	0	1,000	800	3,200	300	2,300	0
○ 소 형 분 양	20,610	500	0	1,000	500	700	3,000	9,200	400	810	500	500	500	1,000	2,000	0
〈민 간 부 문〉	300,000	49,000	26,800	16,000	18,500	8,200	16,300	66,100	7,900	8,700	10,400	8,300	9,900	20,500	29,300	4,100

분기별 물량배분

구 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총 계	500,000	87,100	41,750	25,950	27,150	14,900	23,500	115,140	12,920	15,210	16,120	18,120	19,980	29,310	47,500	5,350
1	120,000	20,143	10,428	6,328	7,032	3,403	6,153	26,937	3,135	3,551	4,039	3,749	4,308	7,714	11587	1,492
2	140,000	23,953	11,923	7,323	7,897	4,073	6,873	31,841	3,637	4,202	4,611	4,731	5,316	8,595	13,407	1,617
3	120,000	21,502	9,699	6,149	6,111	3,712	5,237	28,181	3,074	3,729	3,735	4,820	5,178	6,500	11,253	1,121
4	120,000	21,502	9,699	6,149	6,111	3,712	5,237	28,181	3,074	3,729	3,735	4,820	5,178	6,500	11,253	1,121
공 공 부 분	200,000	38,100	14,950	9,950	8,650	6,700	7,200	49,040	5,020	6,510	5,720	9,820	10,080	8,810	18,200	1,250
1	20,000	3,810	1,495	995	865	670	720	4,904	502	651	572	982	1,008	881	1,820	125
2	40,000	7,620	2,990	1,990	1,730	1,340	1,440	9,808	1,004	1,302	1,144	1,964	2,016	1,762	3,640	250
3	70,000	13,335	5,233	3,483	3,028	2,345	2,520	17,164	1,757	2,279	2,002	3,437	3,528	3,084	6,370	438
4	70,000	13,335	5,233	3,483	3,028	2,345	2,520	17,164	1,757	2,279	2,002	3,437	3,528	3,084	6,370	438
민 간 부 문	300,000	49,000	26,800	16,000	18,500	8,200	16,300	66,100	7,900	8,700	10,400	8,300	9,900	20,500	29,300	4,100
1	100,000	16,333	8,933	5,333	6,167	2,733	5,433	22,033	2,633	2,900	3,467	2,767	3,300	6,833	9,767	1,367
2	100,000	16,333	8,933	5,333	6,167	2,733	5,433	22,033	2,633	2,900	3,467	2,767	3,300	6,833	9,767	1,367
3	50,000	8,167	4,467	2,667	3,083	1,367	2,717	11,017	1,317	1,450	1,733	1,383	1,650	3,417	4,883	683
4	50,000	8,167	4,467	2,667	3,083	1,367	2,717	11,017	1,317	1,450	1,733	1,383	1,650	3,417	4,883	683